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펀드사랑 정기예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조문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「펀드사랑 정기예금」 특약(구 하나은행)	「펀드사랑 정기예금」 특약	구행명 삭제
제 1 조 약관의 적용 펀드사랑 정기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, 거치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을 적용한다.	**제 1 조 적용범위** "펀드사랑 정기예금(이하"이 예금"이라 함)"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한다.	조항명 변경 구행명 삭제
제 2 조 예금과목 (생략)	**제 2 조 예금과목** (좌동)	
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.	**제 3 조 가입대상**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다.	가입대상 추가
제 4 조~ 제 12 조 (생략)	**제 4 조~ 제 12 조** (좌동)	
제 13 조 기타 위 특약 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한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한다.	(삭제)	조문 삭제 (내용 중복)